

# 안 전 소 식

## 공사 시공감리자 事故책임도 저야

### — 대법원, 원심확정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시공감리인은 공사장의 안전관리 책임까지 져야 하므로 안전사고가 난 경우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 1부(주심 李林洙 대법관)는 3일 감리회사인 J엔지니어링 대표 柳부열(66)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감리자는 공사가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할 의무뿐 아니라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할 의무도 있으므로 공사감리책임자인 피고인은 마땅히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할 의무도 있으므로 공사감리책임자인 피고인은 마땅히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를 발생케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1월 3일자〉

## 産業안전행정 노동부로 일원화

### — 위험기계검사는 안전공단서

무한배상보험 가입땐 의무점검 면제

산업안전관련 행정조치가 노동부로 일원화된 다. 이와 함께 안전관련 인·허가 △검사 △의무 고용 △법정교육 등도 대폭 철폐돼 정부의 산업안전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4일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규제완화반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관련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

기획단은 이 방안에서 통상산업부 등 현재 3개 부처 5개기관에 나뉘져 있는 산업안전 행정조치

### ◇ 검사·점검 제도개선

현 행		개 선 안																
<table border="1"> <tr> <th>검사(점검)대상</th> <th>검사(점검)기관</th> </tr> <tr> <td>· 크레인 리프트 프레스</td> <td>산업안전공단</td> </tr> <tr> <td>· 압력용기</td> <td>산업안전공단 에너지관리공단 가스안전공사</td> </tr> <tr> <td>· 보일러</td> <td>산업안전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전기안전공사</td> </tr> <tr> <td>· 승강기</td> <td>승강기안전공사</td> </tr> <tr> <td>· 전기설비</td> <td>전기안전공사</td> </tr> <tr> <td>· 위험물제조소</td> <td>소방서</td> </tr> <tr> <td>· 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td> <td>소방서</td> </tr> </table>	검사(점검)대상	검사(점검)기관	· 크레인 리프트 프레스	산업안전공단	· 압력용기	산업안전공단 에너지관리공단 가스안전공사	· 보일러	산업안전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전기안전공사	· 승강기	승강기안전공사	· 전기설비	전기안전공사	· 위험물제조소	소방서	· 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	소방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내 설치 설비에 대한 정기·수시검사는 한 국산업안전공단으로 일원화</li> <li>· 일반판매 또는 자기사업장의 설치목적 설비는 현재대로</li> </ul>
검사(점검)대상	검사(점검)기관																	
· 크레인 리프트 프레스	산업안전공단																	
· 압력용기	산업안전공단 에너지관리공단 가스안전공사																	
· 보일러	산업안전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전기안전공사																	
· 승강기	승강기안전공사																	
· 전기설비	전기안전공사																	
· 위험물제조소	소방서																	
· 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	소방서																	

를 노동부로 일원화해 부처간 중복규제로 인한 기업이중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5개 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현행 안전관련 인·허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하고 기타 법령상의 인·허가제도는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기획단은 이 가운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용기제조 허가와 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에 대한 인·허가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또한 6개기관에 나뉘져 있는 각종 위험기계에 대한 검사와 점검을 산업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해 중복검사로 인한 기업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사업장내 설치 설비에 대한 △설계 △완성 △성능검사 △보수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통합해 담당한다.

기획단은 이와 함께 화재 및 가스폭발로 인한

## 안전소식

인적 피해에 대한 무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의무점검을 면제해 주는 등 검사와 관련된 정부의 규제를 대폭 철폐하기로 했다. 또 사업장별로 1인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는 것 외의 모든 안전관련 의무고용제를 철폐하는 한편, 안전관련 각종 법정교육도 과감히 철폐하는 등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매일경제신문 1월 5일자)

### 사망 등 중대재해 증가 「위기감」 고조

#### — 사망재해 중 「재래형 반복재해」 77% 매분기 1회씩 취약업체 “일제점검”

중대재해예방대책 무엇을 담고 있다

노동부가 최근 전국 45개 지방노동관서에 중대재해예방대책을 수립, 시달한 것은 사망재해가 1년만에 증가세로 반전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말 현재 전국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재해자수는 모두 2천3백18명.

이는 지난 93년의 같은 기간 사망재해자 1천9백30명에 비해 3백88명(20.1%)이나 늘어난 수치이다.

이 기간중 발생한 사망재해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6백48명으로 가장 많고 건설업이 6백22명으로 이들 두 업종의 사망재해자가 전산업 사망재해의 절반이 넘는 54.8%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기타 산업 3백70명, 운수·창고·통신업 3백57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증가추세가 두드러진 업종 역시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각각 1백39명과 80명이 늘어 전산업 사망재해 증가분 3백88명의 56.4%나 점유하고 있어 이들 업종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운수·창고·통신업에서도 78명이 증가해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조치로 사양길에 접어든

광업을 제외한 전산업에서 사망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처럼 사망재해가 1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전반적인 경기활성화에 따른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전년에 비해 3.4% 증가했을 뿐 아니라 건설업종은 무려 23.7%나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고혈압, 심장병 등 성인병과 교통재해의 산재인정건수 증가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현재 발생한 산재 사망건수 2천3백18건 중 조사대상이 아닌 중대재해는 교통사고 사망 5백58건, 질병사망 4백 89건, 직업병 2백29건, 광산에서의 사망사고 37건 등 모두 1천3백13건으로 전체 사망재해의 56.6%나 점유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지도감독을 주로 사고발생 후 사건처리에 주력, 사전예방활동은 미흡했던 점도 사망재해 증가를 불러온 한 원인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이밖에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 등 관계자의 구속이 크게 줄어들었고 정부의 각종 지도감독 억제 및 안전관리자 고용의무 완화 등 사회전반의 규제완화 분위기에 편승, 노사를 비롯한 안전관계자들의 의식이 약화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말 현재 조사대상 사망사고 1천5건을 형태별로 보면 추락 3백56건(35.4%), 협착 2백26건(22.5%), 감전 1백14건(11.3%), 화재·폭발 74건(7.4%) 등으로 전체의 76.6%를 차지, 재래형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의 사업주 등 관계자에 대한 구속건수는 지난 92년 12건에 달했던 것이 92년 11건, 93년 7건에서 지난해에는 6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 안 전 소 식

여기에는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의 1인당 담당사업장수가 너무 많고 전문지식이 부족해 지도 감독이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은 모두 2백63명으로 감독관 1인당 사업장수가 5백84개소(전체 사업장수는 15만3천5백54개)에 달하고 있으며 감독관 10명 중 7명 가량이 행정직으로 기술직은 전체의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사망 등 중대재해 예방활동에 주력, 취약요인 사전제거에 행정력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특히 추락·협착·감전 등 3대 취약요인에 의한 재해는 간단한 시설개선만으로 사전예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매분기별로 1회씩 전국 45개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진을 투입,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책임전담제, 건설현장 안전점검 등 각종 사업장 지도시 ▲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 착용여부 ▲협착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점 접근방지조치 및 안전덮개 설치여부 ▲감전재해예방을 위한 접지·절연·누전차단기 설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3대 취약요인 개선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이들 재해발생 3대 취약요인에 해당하는 범위반사향이 적발될 경우 작업 또는 사용 중지조치를 내리고 안전벨트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경고장을 발부토록 하는 등 현장에서 곧바로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다발사업장을 등급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사대상 사망재해, 즉 작업중 중대재해가 당해년도 1건이라도 발생한 사업장은 황색, 중대재해가 2건 이상이거나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적색으로 구분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황색등급은 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재해발생일 이후 3개월간 2회 이상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적색등급에 대해서는 연2회 이상 검찰과 합동조사를 벌이게 된다.

등급구분에 따른 점검 결과 1회에 한해 개선지도와 함께 사업주를 경고조치하되 동일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거나 시정기한내에 개선이 완료되지 않을 때에는 관계자를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 대처함으로써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실천에 옮긴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또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의 경우 공장장 등 관리책임자에 대해 적색·황색 등 등급에 따라 별칙성 안전교육을 차등 실시, 경영책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시킨다는 복안이다.

반면 기술적·경제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3백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선 산재예방 특별사업계획에 의거, 이들 사업장의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근원적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산업안전신문 2월 13일자〉

## '95 조달청 조정노임

직종 번호	직 종 명	94 정부 노임	95년 조달청 조정노임
1	평균 상 승 률	1.00	1.28
2	갱 부 수	33,500	29,900
3	토 목 공	52,500	64,900
4	건 축 목 공	43,700	54,000
5	형 틀 목 공	42,800	52,900
6	창 호 목 공	40,400	47,300
7	철 골 공	41,300	51,000
8	철 공	35,500	44,700
9	철 근 공	40,900	50,500
10	철 판 공	35,400	43,700
	서 터 공	37,400	46,200

## 안 전 소 식

11	새 시 공	35,500	42,300
12	절 단 공	36,100	44,600
13	석 공	44,900	55,500
14	특 수 비 계 공	49,700	61,400
15	비 계 공	43,700	54,000
16	동 발 공 ( 터 널 )	40,900	50,500
17	조 적 공	40,300	49,800
18	치 장 벽 돌 공	41,300	51,700
19	벽돌 (블록) 제작 공	31,700	42,200
20	연 돌 공	37,200	46,000
21	미 장 공	42,700	52,800
22	방 수 공	36,500	45,100
23	타 일 공	41,000	50,700
24	출 눈 공	35,800	44,200
25	연 마 공	38,800	48,000
26	콘 크 리 트 공	38,500	47,600
27	바 이 브 레 터 공	34,700	45,200
28	보 일 러 공	34,700	42,900
29	배 관 공	34,400	42,000
30	온 돌 공	31,100	38,400
31	위 생 공	33,900	41,900
32	보 온 공	30,900	38,200
33	도 장 공	38,200	47,200
34	내 장 공	42,400	52,400
35	도 배 공	34,900	43,100
36	아 스 타 일 공	38,800	46,000
37	기 와 공	42,200	58,000
38	슬 레 이 트 공	38,300	71,900
39	화 약 취 급 공	41,200	51,200
40	착 암 공	36,500	44,000
41	보 안 공	27,100	33,500
42	포 장 공	40,300	42,000
43	포 설 공	36,200	44,700
44	케 도 공	27,300	33,700
45	용 접 공 ( 철 도 )	37,800	49,700
46	잠 수 부	53,700	60,300
48	보 링 공 ( 지 질 조사 )	33,000	40,800
49	우 물 공	30,000	39,400
50	영 림 기 사	35,000	72,200
51	조 경 공	35,500	43,800
52	벌 목 부	29,900	36,900
53	조 림 인 부	32,200	38,700
54	플랜트 기계 설치 공	41,900	52,600
55	플랜트 특수 용접 공	49,700	61,400

56	플랜트 용접 공	43,200	53,400
57	플랜트 배관 공	41,600	51,400
58	플랜트 제관 공	40,300	49,800
59	시 공 측 량 사	30,700	37,900
60	시 공 측 량 사 조 수	21,800	26,900
61	측 부	20,000	24,000
63	송 전 전 공	72,000	118,000
65	배 전 전 공	54,000	94,000
66	배 전 활 선 전 공	60,900	112,600
67	플랜트 전 공	43,300	48,400
68	내 선 전 공	36,400	43,600
69	특 고압 케이블 전 공	64,600	79,800
70	고압 케이블 전 공	49,000	53,700
71	저압 케이블 전 공	43,900	52,900
72	철 도 신 호 공	50,400	62,300
73	계 장 공	34,400	42,500
74	통 신 외 선 공	42,700	52,800
75	통 신 설 비 공	37,700	52,700
76	통 신 내 선 공	36,200	45,500
77	통 신 케 이 블 공	47,000	58,100
78	무 선 안 테 나 공	44,600	76,300
79	수 작 업 반 장	41,800	51,600
80	작 업 반 장	36,100	44,600
81	목 도	43,700	54,000
82	조 력 공	26,000	32,800
83	특 별 인 부	31,200	38,500
84	보 통 인 부	22,300	27,200
85	중 기 안 전 기 사	37,200	43,200
86	중 기 조 장	38,000	46,900
87	운전사(운 반 차)	33,800	40,100
88	운전사(기 계)	30,400	36,800
89	중 기 운 전 조 수	27,300	33,700
90	고 급 선 원	35,600	40,100
91	보 통 선 원	26,800	40,100
92	선 부	23,800	35,200
93	준 설 선 선 장	40,300	49,800
94	준 설 선 기 관 장	34,900	43,100
95	준 설 선 기 관 사	29,200	36,600
96	준 설 선 운 전 사	29,100	36,900
97	준 설 선 전 기 사	28,600	36,500
98	기 계 설 치 공	34,000	42,000
99	기 계 공	30,900	39,800
101	정 비 공	30,500	37,600

# 안전소식

103	현	도	사	37,800	68,300
104	제	도	사	30,100	37,200
105	시	협	사 1	급	36,100 44,600
106	시	협	사 2	급	25,800 28,800
107	시	협	사 3	급	24,400 26,500
108	시	협	사 4	급	22,500 21,100
109	시	협	보 조	수	20,000 24,500
110	유	리	공		36,000 44,900
111	함	석	공		34,000 42,000
112	용	접	공 (일 반)		39,500 48,800
115	탁	트	공		31,400 38,800
116	대	장	공		28,400 40,100
117	할	석	공		39,300 48,500
118	제	철	축 로 공		53,100 67,100
119	양	생	공		25,500 37,600
125	철	도	케 도 공		45,800 56,600
126	지	적	기 사 1	급	46,300 60,000
127	지	적	기 사 2	급	38,500 47,600
128	지	적	기 능 사 1	급	29,700 36,700
129	지	적	기 능 사 2	급	22,200 25,000
136	도	편	수		69,400 96,900
137	목	조	각 공		50,200 63,600
138	한	식	목 공		43,000 65,300
139	드	잡	이 공		33,200 46,700
140	한	식	목 공 조 공		51,200 87,700
141	한	식	와 공		74,600 102,200
142	한	식	와 공 조 공		45,200 60,300

\* 평균상승률 28% 상승(1백28개 직종)  
(매일경제신문 2월 14일자)

## 건설기술세미나 개최

###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회장 鄭珠永)는 지난 16·17 양일간 건설회관에서 「건설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장동일 교수(한양대)의 「강구조물의 유지관리와 안전진단」을 비롯, 권영호 연구원(대우 기술연구소)의 「고성능 콘크리트 개발 및 실용화 연구」, 심경수 이사(금호건설)의 「Top-

Down 지하 공사에서의 작업환경개선」, 정일영 교수(서울대)의 「철근 콘크리트의 열화현상과 대책」등 전문가 4명의 주제발표로 진행했다.

(산업안전신문 2월 20일자)

## 부실벌점·기술공모제 도입

### — 외국감리업체 문호개방, 건설공사 단계별 근거규정 마련

#### 건설기술인 세미나

한국건설안전기술인협회(회장 尹錫吉)는 최근 정부, 학계, 업계 및 건설기술인 1천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기술인 세미나를 갖고 부실시공 방지와 건설업의 세계화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 건설교통부의 孫鶴來 과장은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내용을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孫과장이 발표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기술정책 방향」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주>

현재 국내 건설업이 해결해 할 과제는 ▲과거에 건설하여 현존하고 있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 문제 ▲부실시공 근절문제 ▲기술경쟁력을 국제수준으로 제고시키는 문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 이번 개정에서는 부실시공 방지와 국제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조치 중 첫번째는 건설공사 시행절차 근거규정의 마련이다.

현재 우리의 관행은 공사준비과정과 사후관리 과정이 소홀하기 때문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절차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시행절차를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공사준비과정에서 규정해야 할 대표적 사항은 기초지반 등의 사전조사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

# 안 전 소 식

취에 관한 사항이다.

계획·설계과정에서의 규정사항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며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해야 할 사항은 주요 구조물의 설계도면과 서류의 유지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또 부실유형별로 벌점을 주고 이를 누적 점수화하여 입찰참가 또는 수주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실벌점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또한 부실하게 설계·시공·감리한 경우에는 관련업체뿐만 아니라 참여기술자도 제재를 받으며 그 정도를 상향조정하고 종류도 구체적으로 세분화했다.

외국감리회사의 국내공사 감리도 완전 개방한다.

또한 외국감리업체는 종래 등록하지 않고도 국내공사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건설교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번 법 개정에서는 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필요시 건설교통부 장관이 현장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시정명령과 같은 조치를 취하거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설계감리는 현재 시공시에만 실시하던 것을 설계시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상과 담당 용역업자의 자격요건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로는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건설기술자의 신고 및 경력관리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장관은 경력수첩을 발급, 경력사항을 유지·관리토록 했다.

또 건설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은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안전신문 2월 20일자〉

## 20억 미만 현장 安全指導 의무화

### — 勞勤部, 안전管理費 사용기준 改正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소규모 건설현장은 내달부터 건설안전기술사, 초음파탐상기 등 전문인력과 특수장비를 갖춘 민간전문기관의 안전기술지도를 월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또한 기술지도에 필요한 비용은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해주는 안전관리비 중 일부를 사용토록 했다.

23일 노동부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고 지방노동관서 등의 지도·감독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번호 부록 1-3 참조)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90년부터 건설공사금액의 약 1.5%를 건설근로자의 안전보전에 사용토록 의무화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한편 노동부가 분석한 93년 건설공사 재해울현황에 따르면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1만4천981건의 재해가 발생, 전체 건설재해 2만5천129건 중 57.3%를 차지했으며 재해율면에서도 2.43%를 기록, 건설업 평균 1.44%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간건설 2월 24일자〉

## 입찰참가제한 가감기준 명시

### — 관련규정 제정 고시

# 안 전 소 식

## 노동부장관, 필요시 영업정지 요청 가능

사망사고발생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기준이 명문화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재기간이 가중 또는 경감된다.

노동부는 최근 입찰참가제한과 제재기간의 가중 경감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업체의 재해율 조사 및 입찰참가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했다. (이번호 부록 1-2 참조)

이 규정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필요시 도급 또는 수급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영업정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재기간의 가감과 관련해서는 법령 위반사항이 극히 경미하거나 환산재해율이 건설업 전국평균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최근 2년간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와 환산재해율이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인 업체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중토록 규정했다.

〈산업안전신문 2월 27일자〉

## 作業環境 열악 1천개 사업장 特別点檢 일제히 실시

### — 오는 11월말까지 지방노동관서별로

노동부, 작업환경 실태점검 등 技術指導 병행

노동부는 오는 11월말까지 95년도 작업환경 및 직업병 취약사업장 특별점검을 전국 지방노동관서별로 일제히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17일 직업병 유발가능성이 있거나 작업환경이 열악한 사업장 총 1천여개소를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지침을 전국 45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렸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작업환경측정실시 및 결과조치 이행사항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를 집중

확인하는 한편 작업환경 실태점검 등 기술지도를 병행기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국소배기장치의 성능검사 및 적정설치 여부, 불량설비에 대한 개선 및 신규 설치 필요성 파악 등을 위한 작업환경 정밀측정도 필요에 따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지방노동관서별로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근로자 교육상황 △작업환경 측정실시 및 결과조치 이행사항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누락여부 및 유소건자 사후관리 적정여부 △국소배기장치, 보호구 지급·착용 등 보건기준 준수여부 등이 집중 실시된다.

또 이번 점검에서 안전공단은 직업병 취약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실태점검과 동시에 유해작업 공정별 작업환경관리 및 건강관리 개선방안 수립 등 기술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지방노동관서별로 유해요인별, 업체별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신종직업병 발생 등 직업병 관련 동향도 즉시 본부에 보고토록 조치했다.

한편 노동부는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장기간 개선기일이 요구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해물질취급 영세업체 작업환경 개선지원 사업과 연계, 시설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한국무재해신문 3월 2일자〉

## 건설업 企劃 · 專門분야 중점육성

### — 시공위주탈피 CM·PM·設計·감리 등—

적극 外交전개 海外市場진출 확대

3차 國土開發計劃 연내 全面 수정

〈建交部, 업무현황 國會보고〉

## 안 전 소 식

앞으로의 建設業은 施工위주보다는 CM(건설 관리), PM(사업관리), 設計監理, 유지관리 등 부가가치가 높은 企劃·專門분야 중심으로 육성 강화된다.

또 海外市場진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建設外交 전개와 함께 각종 政策金融 이용여건개선이 추진되고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誠實施工분위기 조기정착을 위해 入札資格事前審査制(PQ)가 확대시행된다.

建設交通部는 6일 부처통합 이후 첫 國會업무 보고를 통해 향후 행정의 기본방향을 世界化·地方化에 두고 △國土空間구조 개편 △社會간접자본 통합구축 △物流體制 선진화 △大都市 교통체계 구축 △不動産가격지속 안정 △관련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촉진 등을 6大과제로 선정, 건설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建交通部는 올해안으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전면수정하는 외에 蔚山 등 지방거점공항개발사업을 새로 착수하고 京釜고속철도의 大田·大邱통과구간 건설방안 및 湖南고속철도의 기본계획도 올해안으로 확정키로 했다.

또 大田~함양(103.0km) 大邱~대동(80.2km)등 高速道路 2개사업이 새로 착수되고 浦項圈 등 10개 광역상수도과 群長 등 2개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이 시작되며 民資유치 업무처리요령이 이달중 마련돼 사업별 기본계획이 다음달 이후 고시된다.

중점추진과제별 주요사업내용 중 건설업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 〈建設産業육성과 技術開發〉

현재 국내에는 전문 1만7천763개를 포함, 총 2만개가 넘는 건설업체가 영업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1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民間부문의 외국업체 支社설치가 내년부터 허용되는 등 대내외적 도전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성실시공이라는 과제를 해결키 위한 시책으로 △入札자격사전심사제(PQ) 확대 △大型·特殊工事に 대한 최적적낙찰제 도입 △주요공사의 設計監理制 도입 △하도급계열화·부대입찰제 시행을 적극 추진한다.

주요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며 내년까지 총 6천700억원을 투입, 노후·위험시설물에 대한 전면적인 改·補修를 단행한다.

올부터 첨단기술개발을 본격화, 앞으로 연구개발투자예산을 확대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초기술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에 나선다.

특히 시장개방에 대비,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집중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CM·PM 등 建設事業企劃분야를 강화시켜 건설업체의 종합건설능력을 제고시키고 施工業 위주의 지금까지 관행에서도 벗어나 設計·監理·유지관리 등 전문분야를 집중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최근 海外發注추세가 자체금융조달능력에 요구하는 등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延拂금융·經協基金 등 정책금융의 이용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海外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나갈 계획.

이와 함께 建設外交를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환, 필리핀등 에이펙(APEC) 회원국에 대해서는 고위급이 직접 나서 협상을 추진하고 美國이나 日本 등 선진국 시장에 대해서는 다자간협상을 강화하며 中國·베트남 등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경험지원사업이나 국제차관사업 등의 참여를 확대시켜 나간다.

〈일간건설 3월 7일자〉